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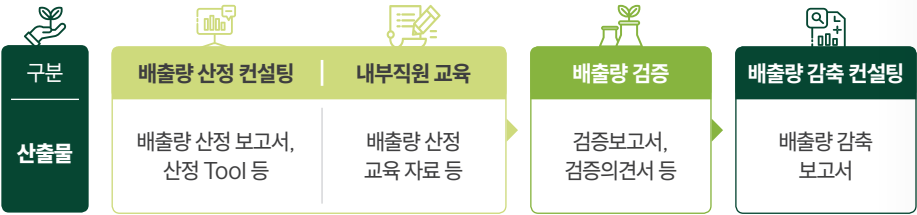
사업 추진 절차 및 지원 범위

지원절차



* (1차 공고) 2월 21일 ~ 3월 21일(마감) / (2차공고) 4월 말 예정
** 접수 물량 미달 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 예정(6월~)

지원 세부절차 및 산출물



지원 범위



보조비율

정부 지원금 최대 **90%** (부가세 참여기업 별도부담)



지원 한도

기업 당 **2,000** 만원 이내

컨설팅

1,200만원 이내

검증

80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및 문의처

사업 신청 방법

ESG 통합플랫폼(esg.kosmes.or.kr)에서 공고 확인 및 사업신청

자주묻는 질문

- Q1** 우리 회사는 제품 생산 시 필요한 원료(Precursor, 전구체)를 다른 협력사에서 제공받습니다. 원료 또한 CBAM 적용 대상이라 품목으로 해당된다면, 해당 원료 생산관련 탄소배출량 정보도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 A1** EU CBAM에서는 품목별로 생산 공법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CBAM 가이드라인 중 '5. CBAM Goods and Production Routes'에서 각 생산 공법의 전구체(Precursor)를 별도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가 CBAM 에서 정의한 Precursor 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될 경우 원료를 공급한 공급사에 탄소 배출량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Q2** CBAM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 A2** 수입업자가 작성하는 CBAM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수입업자가 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해 상품정보 및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정보	· 보고서 발행일, ID, 보고기간 및 연도 · 수입된 상품의 총 수량 및 총 탄소 배출량 · 신고자, 대리인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 · 보고서 제출에 대한 승인 절차
CBAM 상품 정보	· 상품 코드 및 상품 세부 정보 · 수입품 절차(역내가공 포함) · 수입 물품의 수량 및 상응 배출량 · 등록소에 업로드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증빙 문서
CBAM 상품의 탄소 배출량	· 기업명, 생산지, 연락처 등 제조시설 정보 · 보고 방법론에 따라 작성된 상품에 대한 세부 정보 · 직간접 내재 배출량과 연계된 제조설비의 세부 정보 · 지불해야 할 탄소 가격과 제품 및 해당 배출량에 대한 세부 정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751-9774, 9854

 cbam@kosmes.or.kr

 https://esg.kosmes.or.kr



2025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안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측정 · 보고 · 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ESG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소개

EU CBAM이 대체 뭔가요?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 등)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목적

탄소 누출(Carbon Leakage)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규제가 느슨한 역외국 제품을 타겟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탄소배출 감축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 이전

경과

'21.7.14

EU집행위 초안 발표

'22.6.22

EU의회 수정안 발표

'22.12.18

입법(안) 합의

'23.10~

전환기간

'26.1~

확정기간

전환기간 및 확정기간 비교

구분	전환기간('23.10~'25.12)	확정기간('26.1~)
배출량 보고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연 1회 CBAM 신고서 제출 * 검증보고서, CBAM 인증서 포함 제출

전환기간 내 배출량 보고 방법

보고 절차

생산자가 매분기* 신고인(수입업자 또는 관세대리인)에게 배출량 보고
▶ **신고인은 CBAM 전자등록부에 보고서 제출**
*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예: '23.4분기 배출량은 '24.1.31까지 보고)

제재 내용

집행위가 보고서 1차 검토, 회원국별 소관 당국이 2차 검토 후 필요시 시정요청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10~50유로/톤)**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사업 내용

EU CBAM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역량을 강화하고 新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게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과 검증을 종합 지원합니다.

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교육, 검증기관 대응 등 지원

배출량 검증

배출량 검증기관을 통해 지원기업의 탄소 배출량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탄소국경세(CBAM) 산정 방식



지원 대상

- EU로 CBAM 대상품목*을 수출 또는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
-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대 품목
- 6대 품목 제조업종 외에도, CBAM대상 CN코드*로 수출하는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되며, 수출입 시 코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EU 수입업자를 통해 수출상품의 CN코드 확인 필요
- * EU의 독자적인 수출입 코드로 평판업연, 관련결구 등 CBAM 6대 품목 내에서 72개로 분류

국내 수출 HS코드 - EU 수입 CN코드 불일치 예시



신청제외대상

- 후·폐업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연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가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이미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트랙

	기본 트랙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개별 신청
	공급망 트랙	대·중견·중소기업이 대표 신청기업이 되어, 공급사 및 외주사 등과 함께 공동그룹을 구성하여 신청

